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7. 7 선고 2022가단2194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석

변론 종결2023. 5. 19.

판결 선고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21. 12. 21.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22. 1. 24. 접수 제4872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21. 1. 25. B과 보증원금을 9,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 B이 2021. 12. 26.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2. 5. 16. B을 대위하여 C은행에 9,629,733원을 변제한 후 같은 날 위 금액 중 211,130원을 회수하였다.

나. B과 피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1) B은 피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2004년생 및 2007년생인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2) B은 2021년 8월경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와 별거하던 중 2021년 9월경 피고에 대하여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년11681호로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21. 12.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이혼조정'이라 하고, 그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 부분을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B과 피고는 이혼한다.

2. B과 피고는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B은 피고에게 2022. 1. 28.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B 명의 지분 전부(1/2)에 관하여 이 조정성립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B과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다.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을 지정한다.

4.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B이 부담한다.

5. (면접교섭 관련 조항 기재 생략)

6. B과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양육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부제소 합의).

3) B은 2022.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전부 이전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분할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위 1/2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에는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21. 1. 25.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이혼조정 성립일인 2021. 12. 21.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2022. 5. 16. C은행에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으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7, 9,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과 피고는 혼인생활 중이던 2012. 2.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2. 2. 2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를 C은행,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12. 2. 29.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 2012. 9. 13. 채권최고액 30,8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 2017. 11. 1. 채권최고액 29,700,000원인 3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B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위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B은 2016. 12. 23.경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개업하였다.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도 위 피부관리실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B에게, ① 2016. 12. 12. 주식회사 E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6. 12. 13. 위 돈을 보냈고, ② 2017. 1. 10. 퇴직금을 정산받아 그날부터 2017. 1. 16.까지 사이에 합계 20,000,000원을 보냈으며, ③ 2017. 5. 14. 5,000,000원을 보냈고, ④ 2017. 7. 14. C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돈을 보냈으며, ⑤ 2017.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C은행에서 27,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중 24,000,000원을 보냈는데, 위 각 돈은 모두 B의 위 피부관리실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에 가까운 2022년 8월경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의 가액은 102,000,000원 상당이었고, B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위 부동산 1/2지분 외에도 2013년식 스포티지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반면 B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소극재산으로 C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F에 대한 10,664,000원의 신용대출채무, G 주식회사에 대한 775,000원의 신용대출채무, H 주식회사에 대한 4,409,000원의 신용대출채무, 주식회사 I에 대한 6,116,000원의 담보대출채무, J 주식회사에 대한 1,500,000원의 채무, K 주식회사에 대한 300,000원의 채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18,853,600원의 구상금채무, 주식회사 L에 대한 6,313,247원의 채무 등 합계 58,349,4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B의 채무들은 대부분 B이 위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로 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바) 한편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피고의 적극재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외에 다른 적극재산에 관한 자료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C은행에 대하여 위 1순위 내지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에 가까운 2022. 8. 19. 현재 위 1순위 내지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은 74,308,161원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1순위 내지 3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도 B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다른 채무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피고의 소극재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

사) B은 피고에게 위 피부관리실 사업자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거부하다가 피고와 불화를 겪게 되어 가출한 후 이 사건 이혼조정 신청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B의 귀책사유에 의한 혼인 파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위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해당하고, 그 밖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의 요청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이혼조정에서는 각자 명의의 채무를 채무명義자가 그대로 책임지기로 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 외에는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재산분할로서 B과 피고가 혼인 중에 이룩한 공동재산을 적절히 청산·분배함과 동시에 B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 나아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증명이 있는 반면에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것 외에는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소영

별지